

하도급거래 전면 실태조사 실시

- 먼저 건설관련 400개, 제조관련 600개 등 총 1,000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99년 6월 8일(화)부터 하도급거래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실태조사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한 공정위의 시정조치 건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27% 증가하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하도급거래의 속성상 원사업자의 보복이나 거래중단 등을 우려하여 수급사업자가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직권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공정위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는 종전의 한정된 현장조사방식을 지양하고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까지 포함하는 대대적인 서면실태조사 사상 처음으로 도입·실시하여 실시함으로써 조사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현행 현장조사 위주의 단편적인 방식으로는 인력 및 시간 등의 제약으로 인해 조사대상이 한정될 수밖에 없어 개선효과가 미흡하며, 그동안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위반행위를 위주로 조사 및 시정조치가 이루어져 전반적인 하도급거래 질서의 정착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일부 원사업자들은 한 번 직권조사를 받으면 몇 년간은 면제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정위가 이번에 실시하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서는 먼저 건설관련 400개 업체¹⁾와 제조관련 600개 업체²⁾ 등 원사업자 1,000개 업체를 선정하여 6월중에 '98년 하반기('98.7.1~12.31) 동안의 하도급거래에 관해 조사를 벌인 다음 오는 8월중에 원사업자와 거래하고 있는 수급사업자 2,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동 조사 결과를 토대로 10월부터 11월 중에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의 조사항목에 있어서도 하도급대금, 선금급, 어음할인료 등 대금지급관계 뿐만 아니라 부당한 대금감액·반품·대물변제, 계약서면 미교부 등 하도급법상의 모든 위반내용³⁾을 포함시키는 한편, 현금지급비율이나 어음결제기간 등 대금지급조건, 원사업자별 거래 수급사업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여부 및 수급사업자의 주거래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 등 하도급거래의 실태도 파악할 예정으로 있다.

공정위는 동 실태조사 결과 범위반사실이 있으나 경미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 시정지도 위주로 조치하고, 범위반사실이 중대하거나 시정지도에

- 1) 400개 업체 중 50%인 200개 업체를 범위반 전력이 많은 일반건설업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200개 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 100억원 이상의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설비공사업, 정보통신 공사업, 전기공사업, 소방공사업 등 업종별 업체수비율에 따라 배분한 후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순으로 선정
- 2) 600개 업체 중 20%인 120개 업체를 우선 과거 5년간 범위반 전력이 많은 6개 업종에 배분하고, 나머지 480개 업체는 업종별 원사업자 비율에 따라 배분한 후 연간매출액이 높은 순으로 선정
- 3) 서면교부·하도급대금지급·대금지급보증·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8개의 작위의무조항,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부당반품의 금지·부당한 대물변제금지·보복조치 및 탈법행위의 금지 등 10개의 금지조항

따른 이행이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직권조사를 통해 정식으로 시정조치하고,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 실태조사의 결과는 현재 공정위가 구축중인 『하도급거래감시전산망(SCTMN)』에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하도급거래감시전산망이 본격 가동될 경우에는 하도급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의 발생 소지를 원칙적으로 봉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우선 올해중 건설 및 제조분야의

3,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 다음 금년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2000년에는 20,000개 업체를, 그리고 연차적으로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2003년부터는 원사업자에 대하여는 매년 전수조사(全數調査)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수급사업자를 포함한 대규모의 직권실태조사의 실시로 범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다양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업종별 하도급거래 실태의 파악과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거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통시장에서의 가격경쟁 촉진을 위해 재판매가격유지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9일(수) 저작물 유통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재판매가격유지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가 그 상품을 판매(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 가격을 미리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 또는 규약 기타 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로서, 현행 공정거래법상에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독립사업자의 자유로운 판매가격 책정을 구속하여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행위로 보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제29조~제31조의2). 다만 어문·음악·연극·미술·건축·사진·영상·도형·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예술성이나 창작성의 보호를 위해 그동안 예외적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해 왔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저작물

유통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개정 공정거래법시행령에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였다.

즉, '99년 4월 1일부터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은 모든 저작물에서 전자출판물을 포함한 출판된 저작물로 국한했다(개정 공정거래법시행령 제43조). 이에 따라 음악이나 연극, 미술, 건축 등 출판되지 않는 저작물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공정위는 다만,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서정가제)가 인정되고 있는 도서에 대해서는 2002년 말까지는 공정위의 지정이 없더라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가능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으며, 2003년 1월부터 공정위가 지정하는 출판저작물에 대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단체 불공정행위 조사 실시

- 32개 주요 사업자단체 500개 구성사업자 및 200개 주한 외국사업자 대상으로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화) 협회, 연합회 및 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불공정행위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들 단체의 회원사 뿐만 아니라 주한외국사업자들이 이들 단체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사업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99년 6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 중에 사업자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일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금까지 공정위가 신고 위주로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를 적발·시정해 왔으나 신고사례는 실제로 발생하는 경쟁제한행태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자 입장에서 느끼는 사업자단체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시정조치를 함과 동시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주한 외국사업자들이 한국정부가 신규투자시에만 외국사업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 이후에는 관심이 없다는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외국사업자가 국내 사업자단체의 활동에 대해 느끼는 규제 또는 경쟁제한적 형태를 발굴·시정하기 위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주한EU상공회의소(EUCHAM) 및 주한일본상공회의소 등과 협조하여 외국사업자에게는 정회원인 아닌 준회원 자격만을 주는 경우나, 외국사업자에게 과도한 가입비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협회에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를 제출케하고 이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는 경우 등과 같이 주한외국자들이 평소 토로해오고 있는 불만사항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설문형태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가운데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과 관련된 전국은행연합회 등 32개 사업자단체¹⁾의 구성사업자 중 500개 사업자와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각국 상공회의소의 회원인 200개 주요 외국사업자가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를 조사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내사업자에 대해서는 ① 구성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사업활동제한 여부와 그 내용, ② 자율조정이나 과당경쟁방지 등 각종 명목하에 법적 근거 없이 담합행위 등을 주도했는지의 여부와 그 내용, ③ 가입비, 기타 부담이 커서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사항, ④ 기타 사업자단체에 대한 불만사항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주한 외국사업자에 대해서는 ① 국내사업자에 비하여 외국사업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사항, ② 사업자단체에 가입함으로써 또는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받게 되는 각종 불이익, ③ 사업자단체에 가입을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거절당한 사례 및 ④ 한국의 사업자단체에의 가입, 탈퇴 및 사업자단체의 활동 등과 관련하여 개선이

1)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증권업협회, 대한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한국계약협회, 한국양회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한국유기공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대한주류공업협회, 한국사료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관세사회, 한국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대한중합주류도매업중앙회,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고압가스판매업자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이용사회중앙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연식품공업협동조합 등 32개 사업자단체

필요한 사항 등을 중점점으로 조사하게 된다.

공정위는 동 조사결과를 정리해 사업자단체의 활동유형을 파악하여 건전한 활동은 적극 권장하고, 범위반소지가 있는 활동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직권조사 자료로 활용하며, 또한 법적·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기간과 협의하여 체도를 개선하는 한편,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사업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할 방침으로 있다.

주한EU상공회의소가 제기하는 사업자단체의 불공정행위 사례

(Trade Issues 1999)

▶ **외국화장품수입업자에게는 협회(대한화장품공업협회) 활동에 있어서 준회원 자격만을 부여**

- 수입회사에 대해 공정한 정보접근기회 박탈 우려 존재

▶ **사업자단체 가입비 과다(투자신탁협회 가입비 3억원, 증권거래소 가입비 165억원)**

- 투자신탁협회의 경우 협회 발족시 창립회원 3사가 각각 3억원을 출자하였으므로 신규가입회원은 그에 상응하는 임회비(출자금)를 납부하여야 하고, 증권거래소의 경우 지금까지 회원들의 지분으로 관리하여 온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의 자산가치(4,600억 정도로 추산)를 기존회원수로 나눈 가격인 약 165억원을 가입비로 납부해야 협회에 가입할 수 있음

▶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는 성분자료에 대한 정보 보호장치가 없음**

-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새로운 유해물질이 들어있는지의 여부 판단을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에 성분내역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사업자의 중요한 영업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음. 참고로 OECD 등 국가에서는 자기검사(Self-certification)만으로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99년도 대규모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목) 지난 4월 1일 현재 30대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이 지난해 17.7조원에 비해 12.2조원이 증가한 29.9조원으로 1년동안 무려 68.9%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출자총액 증가율이 4.7%인 데 반해 대폭 상승된 것으로, 이중 현대 등 5대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은 작년 4월 1일 현재 11조3,000억원에서 올 4월 1일 현재 22조8,000억원으로 102%가 증가했으며, 6대 이하 30대까지의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은 이 기간 중 6조4,000억원에서 7,000억원 증가한 7조1,000억원으로 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도별 출자총액 및 자기자본 비율>

(조원, %)

구 분	'95	'96	'97	'98	'99
출자총액(A) (증가율)	11.3 (16.6)	13.6 (20.2)	16.9 (24.3)	17.7 (4.7)	29.9 (68.9)
자기자본(B) ¹⁾ (증가율)	49.2 (15.8)	62.2 (26.4)	69.8 (12.2)	68.5 (△1.9)	96.7 (41.2)
출자비율(A/B)	23.0	21.9	24.2	25.8	31.0

이번에 공정위가 발표한 기업집단별 출자총액 증가액에 따르면 현대가 3조9,878억원(1년전 대비 155% 증가), 대우가 3조1,330억원(148% 증가), 삼성이 1조167억원(39% 증가), LG 1조8,326억원(71%), SK 1조5,488억원(39% 증가) 등으로 현대와 대우의 증가율이 특히 높았으며, 5대 기업집단 출자총액 증가액 중 유상증자 규모는 7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69%를 차지하여 30대 기업집단 전체의 유상증자 규모인 8조8,000억원의 90.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특히 5대 그룹의 유상증자 규모가 큰 이유는 5대 그룹이 부채비율 감축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했으며, 동 증자의 상당부분을 계열사가 인수한 데 기인한다고 분석된다.

계열사를 중심으로 한 내부지분율은 삼성이 작년 44.6%에서 42.5%로 2.1%P 낮아진 것을 제외하고는 현대 2.7%P(53.7%→56.4%), 대우

13.1%P(41.0%→54.1%), LG 10.5%P(41.9%→52.4%), SK 8.4%P(58.4%→66.8%) 등으로 높아졌다. 또한 6대 이하 30대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도 41.3%에서 43.5%로 2.2% 낮아졌으며, 30대 기업집단 전체로 보면 44.5%에서 50.5%로 6.0%P 높아졌다. 이와 같이 내부지분율, 특히 계열회사 지분율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은 계열사들의 제3자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 참여나 대량실권주의 인수나 계열회사 보유지분율이 높은 일부 비상장회사의 유상증자에의 참여 등과 같이 자기자본비율 제고 등 기업집단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유상증자에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들이 대거 참여한 데 기인하며, 「현대」의 기아인수 등 계열사 신규편입과 계열사 주식의 추가매입 등도 내부지분율 증가의 한 요인이라고 분석된다. 또한 계열편입 및 제외에 따른 출자총액은 지난 1년간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수가 804개사에서 686개

<30대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을 현황>

(%)

구 분	동일인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자기주식	계
'98. 4. 15	3.1	4.8	35.7	0.9	44.5
'98. 4. 1	2.0	3.4	44.1	1.1	05.0
증 감	△1.1%P	△1.4%P	8.4%P	0.2%P	6.0%P

사로 대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가 「기아」관련 13개사를 인수함에 따라 41.2조원이 증가했으며, 5대 기업집단의 경우 계열편입 및 제외로 인한 출자총액은 1조2,600억원 증가했으며, 현대를 제외할 경우 출자총액은 900억원이 증가했으며, 6대 이하 30대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출자총액이 1,000억원 감소했다.

한편, 그동안 증가추세를 보이던 평균영위업종수는 비주력분야의 계열사 정리 등에 따라 '99년 4월에 19.2개사로 전년도 20.0개보다 0.8개 감소하였으며, 5대 기업집단의 경우는 31.0개에서 30.0개로 1개 감소했으며, 6대 이하 30대 기업집단의 경우 17.8개사에서 17.0개사로 0.8개 감소해 30대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은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 과거와 같이 출자를 통한 무분별한 사업확장이 진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0대 기업집단의 대규모 유상증자의 계열사 인수 등에 대해 유상증자 등을 통한 출자가 재벌의 부실계열사 지원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 2월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 등이 시급하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작년 2월까지 30대 기업집단의 계열사는 순자산의 25%까지만 다른 기업에 출자할 수 있었으나 국내기업에 대해서만 출자총액을 제한할 경우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는 데다 기업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2월 동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48개 신규편입회사의 영위업종현황>

구 분	회 사 명	
제조업 (17)	자동차(6)	기아자동차, 아시아자동차, 기아중공업, 기아정기, 기아모텍, 한국에이비시스템(현대)
	전자(2)	기아전자(현대), 아이피시(삼성)
	화학(2)	LG다우폴리카보네이트, LG슈플리(LG)
	기타(7)	경우정화기술(대우), 금호고무(금호), 팝코전주(한솔), 오비맥주(두산), 진우기계(진로), 환영철강공업, 한국타포린(신호)
무역·서비스업(12)	현대아산(현대), 아시아자동차판매, 기아자동차판매, 기아대전판매, 기아인터트레이드(현대), 삼성전자서비스(삼성), LG전자서비스(LG), 스틸라해운, SK엔론(SK), 유일개발(쌍용), 아시아나지원시설(금호), 우신공영(진로)	
금융·보험 및 관련서비스업(8)	강원은행, 강은상호신용금고, 기아포드할부금융(현대), 삼성생명, 투신운용, 삼성화재손해사정, 삼성투자신탁증권(삼성), LG신용정보(LG), 코오롱신용정보(코오롱)	
정보통신업(5)	기아정보시스템(현대), SK텔링크(SK), 한솔윌드폰(한솔), 진우통신(진로), 와이어리스테크(아남)	
에너지(3)	부산도시가스, 부산도시가스개발(SK), 서해에너지(쌍용)	
건설업(3)	국민, 국민레미콘, 국민콘크리트(쌍용)	

주) '98. 4. ~'99. 3 기간 중 신규편입되었다가 다시 계열제외된 7개사(현대쇼핑, 대우남서울서비스, 대우분당서비스, 중앙컬처미디어, 수인가스, 일산유원지개발, 두산전자)는 제외

◆ '99년도 대규모기업집단 출자현황 ◆

(1999. 4. 1. 기준, 백만원, %)

기업집단	자본총계(A)	출자총액			자본총계대비 출자비율(B/A)
		소계(B)	계열사	비계열사	
1 현대	15,021,382	6,568,531	6,073,211	495,320	43.73
2 대우	16,869,710	5,243,455	4,771,830	471,625	31.08
3 삼성	17,127,943	3,595,812	3,136,954	458,858	20.99
4 엘지	11,552,950	4,425,191	4,037,101	388,090	38.30
5 에스케이	9,489,861	3,003,506	2,870,423	133,083	31.65
6 한진	3,249,056	541,739	382,137	159,602	16.67
7 쌍용	935,668	552,083	435,151	116,932	59.00
8 한화	2,989,378	511,437	369,764	141,673	17.11
9 금호	1,607,879	667,761	556,304	111,457	42.53
10 롯데	4,776,946	489,488	427,857	61,631	10.25
11 동아	8,544,444	126,448	43,716	82,732	14.80
12 한솔	1,789,259	562,863	304,620	258,243	31.46
13 두산	1,552,485	284,741	203,087	81,654	18.34
14 대림	1,258,760	141,813	130,664	11,149	11.27
15 동국제강	1,852,245	256,014	154,819	101,195	13.82
16 동부	1,414,163	385,181	339,810	45,371	27.24
17 한라	-407,394	31,248	12,291	18,957	-7.67
18 고협	-863,586	182,965	136,596	46,369	-21.19
19 동양	1,356,205	133,502	39,755	93,747	9.84
20 코오롱	1,127,630	310,298	145,780	164,518	27.52
21 동양	876,254	364,819	319,776	45,043	41.63
22 진로	-788,181	460,453	455,611	4,842	-58.42
23 아남	47,867	132,624	104,979	27,645	277.07
24 해태	-629,124	106,175	65,010	41,165	-16.88
25 새한	932,153	95,926	85,664	10,262	10.29
26 강원산업	545,733	96,484	89,592	6,892	17.68
27 대상	757,653	88,366	75,077	13,289	11.66
28 제일제당	1,125,905	312,655	180,050	132,605	27.77
29 신호	-453,156	53,544	35,706	17,838	-11.82
30 삼양	762,350	215,857	149,697	66,160	28.31
합계	96,732,438	29,940,979	26,133,032	3,807,947	30.95

* 「자본총계」: 금융·보험업 영위회사를 제외한 수치임

◆ 기업집단별 출자변동 현황 ◆

(1999. 4. 1. 기준, 백만원, %)

기업집단	'98. 4. 15. 현재			'99. 4. 1. 현재			변동현황	
	자본총계 (a)	출자총액 (b)	출자비율 (c=b/a)	자본총계 (d)	출자총액 (e)	출자비율 (f=e/d)	출자총액 (e-b)	출자비율 (f-c)
1 현대	10,668,970	2,580,644	24.19	15,021,382	6,568,531	43.73	3,987,887	19.54
2 대우	9,033,862	2,112,867	23.39	16,869,710	5,243,455	31.08	3,130,588	7.69
3 삼성	13,492,079	2,579,022	19.12	17,127,943	3,595,812	20.99	1,016,790	1.88
4 엘지	8,491,102	2,592,524	30.53	11,552,950	4,425,191	38.30	1,832,667	7.77
5 에스케이	5,120,821	1,454,699	28.41	9,489,861	3,003,506	31.65	1,548,807	3.24
6 한진	1,885,973	494,732	26.23	3,249,056	541,739	16.67	47,007	-9.56
7 쌍용	2,988,354	448,778	15.02	935,668	552,083	59.00	103,305	43.99
8 한화	917,478	420,682	45.85	2,989,378	511,437	17.11	90,755	-28.74
9 금호	979,871	595,846	60.81	1,607,879	667,761	41.53	71,915	-19.28
10 롯데	2,732,906	399,381	14.61	4,776,946	489,488	10.25	90,107	-4.37
11 동아	1,906,527	400,416	21.00	854,444	126,448	14.80	-273,968	-6.20
12 한솔	1,219,200	370,772	30.41	1,789,259	562,863	31.46	192,091	1.05
13 두산	954,044	320,416	33.59	1,552,485	284,741	18.34	-35,675	-15.24
14 대림	1,090,254	183,817	16.86	1,258,760	141,813	11.27	-42,004	-5.59
15 동국제강	1,084,536	254,368	23.45	1,852,245	256,014	13.82	1,646	-9.63
16 동부	996,599	243,544	24.44	1,414,163	385,181	27.24	141,637	2.80
17 한라	-633,587	99,502	-15.70	-407,394	31,248	-7.67	-68,254	8.03
18 고합	901,095	207,244	23.00	-863,586	182,965	-21.19	-24,279	-44.19
19 동양	927,526	140,940	15.20	1,356,205	133,502	9.84	-7,438	-5.35
20 코오롱	901,609	258,280	28.65	1,127,630	310,298	27.52	52,018	-1.13
21 동양	626,151	233,212	37.30	876,254	364,819	41.63	131,607	4.33
22 진로	-804,111	85,473	-10.63	-788,181	460,453	-58.42	374,980	-47.79
23 아남	269,046	143,108	53.19	47,867	132,624	277.07	-10,484	223.88
24 해태	234,105	134,656	57.52	-629,124	106,175	-16.88	-28,481	-74.40
25 새한	512,010	93,926	18.34	932,153	95,926	10.29	2,000	-8.05
26 강원산업	560,770	139,673	24.91	545,733	96,484	17.68	-43,189	-7.23
27 대상	380,247	119,990	31.56	757,653	88,366	11.66	-31,624	-19.89
28 제일제당				1,125,905	312,655	27.77		
29 신호	392,337	121,674	31.01	-453,156	53,544	-11.82	-68,130	-42.83
30 삼양				762,350	215,857	28.31		
합계	68,472,414	17,673,965	25.81	96,732,438	29,940,979	30.95	12,267,104	5.14

* 「자본총계」: 금융·보험업 영위회사를 제외한 수치임

◆ 기업집단별 내부지분을 현황 ◆

(1999. 4. 1. 기준, 백만원, %)

기업집단	금 액					소유지분율						
	자본금 (a)	동일인 (b)	특수관계인 (c)	소속회사 (d)	자기주식 (e)	b/a	c/a	(b+c) /a	d/a	e/a	(d+e) /a	(b+c+ d+e)/a
1 현 대	12,257,323	138,390	520,497	6,188,225	64,204	1.1	4.2	5.4	50.5	0.5	51.0	56.4
2 대 우	6,771,964	263,989	116,409	3,219,184	63,226	3.9	1.7	5.6	47.5	0.9	48.5	54.1
3 삼 성	5,837,986	41,009	73,273	2,287,911	79,209	0.7	1.3	2.0	39.2	1.4	40.5	42.5
4 엘 지	6,229,708	15,980	212,837	2,992,117	40,357	0.3	3.4	3.7	48.0	0.6	48.7	52.4
5 에스케이	2,446,313	103,197	51,135	1,445,306	33,633	4.2	2.1	6.3	59.1	1.4	60.5	66.8
6 한 진	1,083,307	47,963	131,033	238,415	24,317	4.4	12.1	16.5	22.0	2.2	24.3	40.8
7 쌍 용	1,063,413	36,914	22,240	469,017	13,196	3.5	2.1	5.6	44.1	1.2	45.3	50.9
8 한 화	1,004,840	41,208	11,659	271,139	22,858	4.1	1.2	5.3	27.0	2.3	29.3	34.5
9 금 호	1,147,292	4,010	19,180	530,732	30,721	0.3	1.7	2.0	46.3	2.7	48.9	51.0
10 롯 데	1,557,685	13,667	76,053	358,486	65	0.9	4.9	5.8	23.0	0.0	23.0	28.8
11 동 아	483,002	8,482	6,623	241,937	9,099	1.8	1.4	3.1	50.1	1.9	52.0	55.1
12 한 솔	1,588,839	7,958	27,148	360,761	3,377	0.5	1.7	2.2	22.7	0.2	22.9	25.1
13 두 산	379,015	3,346	46,659	148,462	18,509	0.9	12.3	13.2	39.2	4.9	44.1	57.2
14 대 립	548,055	10,690	23,789	158,091	0	2.0	4.3	6.3	28.8	0.0	28.8	35.1
15 동국제강	543,425	21,178	44,392	137,423	787	3.9	8.2	12.1	25.3	0.1	25.4	37.5
16 동 부	606,823	20,171	27,571	334,926	5,390	3.3	4.5	7.9	55.2	0.9	56.1	63.9
17 한 라	338,242	1,355	54,712	55,899	11,901	0.4	16.2	16.6	16.5	3.5	20.0	36.6
18 고 합	270,076	4,397	2,474	39,559	20,052	1.6	0.9	2.5	14.6	7.4	22.1	58.3
19 동 양	174,843	15,060	5,706	43,235	37,987	8.6	3.3	11.9	24.7	21.7	46.5	58.3
20 코 오 롱	404,931	7,002	19,413	122,204	4,491	1.7	4.8	6.5	30.2	1.1	31.3	37.8
21 동 양	957,492	10,917	27,466	460,174	4,268	1.1	2.9	4.0	48.1	0.4	48.5	52.5
22 진 로	631,197	35,500	6,633	455,073	0	5.6	1.1	6.7	72.1	0.0	72.1	78.8
23 아 남	353,185	9,669	21,830	70,226	825	2.7	6.2	8.9	19.9	0.2	20.1	29.0
24 해 태	120,877	4,792	3,670	54,239	355	4.0	3.0	7.0	44.9	0.3	45.2	52.2
25 새 한	171,427	10,234	13,373	63,911	0	6.0	7.8	13.8	37.3	0.0	37.3	51.1
26 강원산업	132,398	901	13,114	71,027	0	0.7	9.9	10.6	53.6	0.0	53.6	64.2
27 대 상	116,546	22,865	11,640	50,958	12,293	19.6	10.0	29.6	43.7	10.5	54.3	83.9
28 제일제당	436,133	41,977	2,182	189,046	6,173	9.6	0.5	10.1	43.3	1.4	44.8	54.9
29 신 호	286,567	19,555	1,365	66,643	6,036	6.8	0.5	7.3	23.3	2.1	25.4	32.7
30 삼 양	178,888	1,525	21,321	75,957	4,218	0.9	11.9	12.8	42.5	2.4	44.8	57.6
합 계	48,121,792	963,871	1,615,397	21,200,283	517,547	2.0	3.4	5.4	44.1	1.1	45.1	50.5

8개 전문자격사 보수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대한상공회의소,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한국무역협회, 한국발명진흥회 조사 결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24일(목)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8개 전문자격사들의 보수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5일 약칭 “카르텔일괄정리법”이 공포·시행되어 전문자격사 단체들이 정하던 보수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부당한 보수를 지불하게 되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격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99년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문자격사별로 수요자단체가 공정위의 지원을 받아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번 공정위의 전문자격사 보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전문자격사들이 보수기준이 폐지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전문자격사별로 조사항목별 최고액과 최저액간의 편차는 평균 2 내지 5배가 발생하여 서비스 수준에 따른 가격차별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공인노무사, 수의사의 경우는 항목별로 최고 10배, 변리사는 최고 7배까지 가격차별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전 보수기준과 비교한 전반적인 보수 수준은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관세사가 전반적으로 종전 보수기준보다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공인노무사는 전반적으로 보수수준에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호사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보수수준이 높아졌다고는 할 수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보수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입료를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

사는 법무사 등과의 영업경쟁 등 영업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종래에 비해 현실적으로 낮았던 수준에 비해 보수기준이 다소 상승하였으며, 변리사와 수의사는 종전 보수기준 또는 진료비기준보다 다소 상승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의 지원으로 대한상공회의소 등 각 수요자단체가 실시한 이번 실태조사는 오랫동안 범으로 보호받아 왔던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사들의 “협정가격” 체제가 “카르텔일괄정리법”의 제정으로 붕괴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이들 서비스 시장에 경쟁체제가 자리잡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것이며, 전문자격서비스별 보수수준이 체계적으로 조사·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시장기능 작동을 위한 가격정보 유통 활성화에 직접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조사방법이 다소 미흡했던 점과 일부 전문자격사들이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등이 애로사항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조사결과 조사대상 전문자격사의 80% 이상이 보수기준 폐지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동일 서비스에 대해서도 자격사별 보수가 크게 차별화되는 등 경쟁분위기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전문자격사 규제개혁방안('99.4.9.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자격사 선발인원 증가 등으로 공급이 확대되면, 개별 자격사간 가격경쟁이 본격화되어 전반적인 보수수준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 1)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김상하) :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재철) : 관세사
 • 한국발명진흥회(회장 이상희) : 변리사
 •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회장 이남주) : 변호사, 행정사, 수의사
 * 대상지역 : 5대 도시(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한편, 대한상공회의소 등 조사단체들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하반기중 실시예정인 2차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응답률을 높이고 보

다 정확한 답변을 유도할 수 있는 조사기법을 개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하고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다.

◆ 전문자격사 현황 및 공급확대방안 ◆

1. 현황

구 분	시험합격자			선발방법 (시험선발 인원제한 요건)	시험 주기	자격사 수 (98년말 기준)	
	'98	'97	'96			등록 인원	경력자수 (비율)
변호사	700	604	502	시험(행자부장관이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	1년	3,485	-
공인회계사	511	453	356	시험(재경부장관이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	3,384	-
세무사	301	306	250	시험/경력('96년부터 국세청장이 선발예정인원 공고)	1년	3,363	816 (245%)
관세사	56	15	13	시험/경력(관세청장이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선발예정인원 공고사례 없음	1년	576	493 (85.6%)
변리사	80	71	60	시험/경력(특허청장이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90년 이후 선발예정인원 공고	1년	598	172 (29.0%)
공인노무사	37	43	-	시험/경력(노동부장관이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선발예정인원 공고사례 없음	1년	599	372 (62.1%)
행정사	-	-	-	시험/경력(행자부장관, 시·도지사가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시험실시사례 없음	-	약 3,000	약3,000 (100%)
법무사	30	-	80	시험/경력(법원행정처장이 사전선발인원 결정)	2년	3,281	3,089 (94.2%)
건축사	973	1,316	1,048	시험(규제 없음)	1년	6,888	-
수의사	매년 400여명			시험	1년	9,638	-

2. 공급확대방안

- 규제개혁위원회는 11개 전문자격사의 자격시험제도 개선을 통한 공급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규제개혁방안을 확정·의결('99.4.9)
 - * 11개 자격사 : 보수기준 폐지 9개에서 1개 자격사(수의사) 제외, 3개 자격사(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포함
- 공급확대방안
 - 자격시험제도 개선
 - 단기방안 : 선발인원 대폭 확대
 - 장기방안 : 2002년 이후에는 모든 시험을 자격시험제도로 전환

- 공무원 경력인정제도 개선
 - 공무원 자동 자격부여제도를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로 개선
 - 2000년까지 시험을 통한 자격사가 자동 자격부여자보다 더 많이 배출되게 하고, 2001년부터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로 운영
- 법인설립 및 영업활동 관련 규제를 개선
 - 법인설립시 필요한 자격사 수를 하향조정, 분사무소 설치제한 원칙 폐지, 보유직원수 제한 원칙 폐지, 전문자격사 수에 따른 수입한도 제한 폐지 등

'99년 5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공정거래위원회는 '99년 5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변동됨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을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난 6월 1일자로 변동내용을 당해회사와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으로 새로 편입된 회사는 상호출자금지과 상호채무보증의 금지 등의 각종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99년 5월중에 새로 대규모기업집단에 신규편입된 회사는 1개사인 반면, 10개사가 계열제외되어 '99년 6월 1일 현재 30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는 지난 '99년 5월 1일 677개사에서 668개사로 감소되었다.

또한 기업집단 규모별로는 1~5대 기업집단에서 3개사가 순감하고 6대 이하 기업집단에서는 6개사가 순감하였다.

◇ '99년 5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개요 ◇

(단위 : 개사)

구 분	'99. 5. 1	편 입			제 외						증 감	'99. 6. 1
		회사 설립	주식 취득	계	합병	청산	지분 매각	지정 제외	기타	계		
전 체	677	-	1	1	5	1	3	-	1	10	△9	668
1~5대	227	-	1	1	3	1	1	-	-	4	△7	224
6~30대	450	-	-	-	2	1	2	-	1	6	△6	444

◇ '99년 5월중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내용 ◇

- ◎ 편입 : 1개사(주식취득 1)
- ◎ 제외 : 10개사(합병 5, 지분매각 3, 청산종결 1, 기타 1)

구분	편 입			제 외			증감
	회 사 명	업 종 명	사 유	회 사 명	업 종 명	사 유	
현 대	대화쇼핑	소매업 (백화점)	주식취득 (63%)	현대엔지니어링(주)	건축엔지니어링 및 관련기기	현대건설(주) 에 합병	0
엘 지	-	-	-	(주)엘지레저	운동설비운영업	(주)엘지유통에 합병 ('99.5.3)	△3
	-	-	-	(주)엘지교통정보	데이터베이스업	(주)엘지인터넷 에 합병	

구분	편 입			제 외			증감
	회사명	업종명	사유	회사명	업종명	사유	
엘지	-	-	-	엘지하니웰(주)	공장제어시스템 및 기기제조	지분매각 (50%→0%)	
한진	-	-	-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주)	항공기급유시설	민관합동법인으로 제외	△3
				(주)한국항공	1차 금속산업	한국공항(주)에 합병 ('99.4.30)	
				코리아타코마 조선공업(주)	선박건조 및 수리업	(주)한진중공업에 합병 ('99.4.20)	
금호	-	-	-	에이치디 폴리우레탄(주)	폴리우레탄화학 제품수입판매	청산 ('99.4.15)	△1
한라	-	-	-	한라공조(주)	자동차부품제조	지분매각 (35%→0%)	△1
새한	-	-	-	한국타포린(주)	합성수지제조	지분매각 (24.5%→0%)	△1
계	1			10			△9

신 규 회 원 사
소 개

회원 가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주) 온 세 통 신

대표이사 장 상 현

전기통신업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2-1